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의 안 번 호 948 제안연월일: 2024. 6. .

제 안 자 :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한국교육방송공사법			제415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
일부개정법률안	정청래의원	2024.5.31.	의(2024.6.14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
(제2200066호)			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
한국교육방송공사법			제415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
일부개정법률안	이훈기의원	2024.6.3.	의(2024.6.14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
(제2200102호)			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
한국교육방송공사법			제415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
일부개정법률안	고민정의원	2024.6.7.	의(2024.6.14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
(제2200228호)			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
한국교육방송공사법			제415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
일부개정법률안	최민희의원	2024.6.10.	의(2024.6.14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
(제2200265호)			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
한국교육방송공사법			제415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
일부개정법률안	한준호의원	2024.6.13.	의(2024.6.14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
(제2200464호)			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

가. 제415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.

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,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,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,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(안 제9조 및 제13조등).

나.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(안 제10조

제4항 신설).

다.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 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,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 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받아 임명한다"를 "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- 1.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제13조제2항 중 "9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

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

경우 성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- 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4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"

-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중 "사장ㆍ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) ① (생 략)	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장은 <u>방송통신위원회 위</u>	② <u>제13조에 따른 이사</u>
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	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
를 받아 임명한다.	<u>다</u> .
③ 감사는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③이사회의 제청으로
임명한다.	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
④ 부사장은 사장이 <u>임명한다</u> .	④임명하되,
	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③	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
	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
	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	<u>1.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	해당하는 경우
	<u>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</u>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<u>경우</u>
	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
	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
	지장을 초래한 경우
	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

① (생략)

-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.
-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2	-
<u>21명</u>	

-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|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한다.
 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 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 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 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성 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 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1명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 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.
- <u>⑤</u>・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
⑥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< 단</td>서 신설>

<신 설>

<신<u>설></u>

⑦ ~ ⑨ (생 략)

과 같음)

<u>⑦</u> -----
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
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
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
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
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<u>(1)</u> ~ <u>(1)</u> (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 의결하다.

1. ~ 5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6. ~ 12. (생략) ② (생략) <신 설>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 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- 6. ~ 1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

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
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